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8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 : 홍정민 · 오영환 · 윤관석

양이원영•도종환•인재근

박성준・송기헌・조승래

서동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경찰 또는 재해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금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 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목적 으로 공공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및 보안인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
	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
	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65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
	<u>치·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u>
	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은 제65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장
	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
	<u>치·사용할 수 있다.</u>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와이
	파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및 보안인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